

[특집]

성직자 신분*



안 병 영
[부산교구 신부]

-
- I. 서 론
 - II. 본 론
 - 1. 1983년 법전 안에서 ‘신분’
 - 1.1. 평신도 신분
 - 1.2. 성직자 신분
 - 2. 성품성사의 요건들
 - 2.1. 유효성을 위한 요건들
 - 2.2. 합법성을 위한 요건들
 - 2.3. 서품식
 - 2.4. 성직자의 입적
 - III. 결 론
-

I. 서 론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성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성직자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있기에, 본성적으로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¹⁾ 그리하여 “성직자가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행해지게 되며, 성직자의 ‘나는’ 예수님의 ‘나는’에 전적으로 연관된다.”²⁾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말씀에 따라 성직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적으로 연관된다.” 이 연관은 교회 안에서 신자에게 성품성사를 통해 새로운 신분을 살아가게 하며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지니게 한

1) Benedetto xvi, *Pensieri sul Sacerdozio*, Città del Vaticano, 2009, p.19.

2) *Ibid.*, p.16.

다. 새로운 신분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은 곧, “하느님께 축성된 이들로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의 신비의 분배자들이기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이러한 이유로 성덕을 추구해야만 함”(교회법 제276조 제1항 참고)을 의미한다. 새로운 신분을 받은 신자로서 그 신분에 알맞은 성덕의 삶을 살아야함이 ‘하느님께서 제정하신’(교회법 제207조 제1항 참고) 성직자이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본성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있게 된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직자는 교회 안에서 세례 받은 신자가 성품성사로 받게 되는 신분이다(교회법 제207조 제1항 참조). 신자가 이 신분을 받기 위해선 교회가 제시하는 요건들이 있다. 후보자의 소속 주교 혹은 관할 상급 장상은 “현명한 판단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지향이 올바르며 합당한 지식을 갖추고 평판이 좋으며 품행이 바르고 덕행이 있으며 또한 받을 성품에 합당한 신체적 및 심리적 기타 자격들을 구비하고 있는”(교회법 제1029조) 신자에게 서품을 수여한다. 서품은 3단계가 있으며 첫 단계인 부제품으로 성직자의 신분을 교회로부터 받게 된다(교회법 제266조 제1항). 신자가 성직자 신분을 받기 위한 요건은 주교와 장상이 판단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품 받는 이의 소속에 대한 범위를 교구로 그리고 직권자는 주교로 제한하여 교회법전에서 규정하는 서품 전제 요건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1983년 법전 안에서 ‘신분’

1983년 법전 안에서는 68번의 ‘Status’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주로 ‘신분’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³⁾ 신분(Status)은 한 인격이 유효한 성

3) “Status”는 35번, “성직자 신분”(clericalis status)은 26번, “사람들의 신분”(lo status personarum)은 6번, “정하여진 시기”(lo status temporibus)는 1번이다: X. Ochoa, *index*

사 혹은 유효하지 않은 성사를 받는 순간부터 고정된 의무와 권리를 받게 된다.⁴⁾ 또한 법전은 자연인의 신분들을 규정한다. 신앙인 외에, 성직자의 신분, 평신도의 신분과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하는 봉헌 생활회 회원의 신분 그리고 혼인의 삶을 선택한 이들로서 부부의 신분이다(교회법 제207조; 제226조 1항; 제588조 제1항).⁵⁾ 그

verborum ac locutionum Codis iuris Canonici, Roma, 1983, pp.420-421; A. Gilbert, *The mission of the family in the church in the light of can.226 §1*, Roma, 2002, pp.96-97; “Status”라는 단어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언급된 “ordo”라는 단어로부터 구분되었으며 이미 로마법에서 구별되었다. 처음, 사람들의 법적이고 안정적 능력인 의무 그리고 권리와 관련이 있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Status”는 영구적인 능력으로 인격에 관련된 것이며, “ordo”는 자신의 “Status”를 잃어버리지 않고 “ordo”를 떠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인격과는 관계가 없었다. 오늘날 이 차이는 1983년 법전에서 여전히 적용된다: P. Valdrini, *Comunità, persone, governo: Lezioni sui libri I e II del CIC 1983*, Città del Vaticano, 2013, pp.175-177.

4) 일반 규범에 관한 제96조는 교회 안에서 법적인 신분의 획득과 세례 사이의 유대의 다른 묘사(서술)가 포함된다. ‘신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닌 좀 더 법적인 단어인 ‘사람’ ‘인격’ ‘그리스도교인’이 사용되었다. “세례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체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되어 교회의 친교 안에 있는 한도 만큼 또 합법적으로 내려진 제재가 장애하지 아니하는 한, 각자의 신분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고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법으로 그리스도교 안에서 법인격의 획득의 정확한 언급은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기본적인 인격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다. 제96조는 (좀 더 법적으로)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체된 사람은 인격적 신분을 받음(법적인 성격)을 규정한다. 즉 법인격의 신분, 예를 들어 교구, 본당, 단체로부터 구분되는 자연인의 신분을 다룬다. 자연인은 그리스도인(법적 능력)의 의무와 권리를 획득한다: P. Valdrini, *Comunità, persone, governo: Lezioni sui libri I e II del CIC 1983*, p.154.

5) 교회법 제207조는 교회의 3가지 기본 신분을 규정한다. 첫 번째 항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두 신분을 규정한다. “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성직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은 평신도들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항에서는 교회 안에 카리스마 적인 삶과 관련된 신분을 규정한다. “성직자와 평신도 이 양편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 교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재가 된 서원이나 그 밖의 거룩한 결연을 통한 복음적 권고의 선서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되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신분은 교회의 교계 조직에는 상관 없이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 “Status”란 단어는 또 혼인 생활을 하는 평신도의 신분에도 규정된다. 즉, ‘부부의 신분’을 획득한다. 제226조 제1항 “부부의 신분으로 사는 이들은 고유한 소명에 따라 혼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의무가 있다.”: P. Valdrini, *Comunità, persone, governo: Lezioni sui libri I e II del CIC 1983*,

리나 세례로 각자의 신분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의무들과 권리들(교회법 제96조)은 통치권⁶⁾ 혹은 위임된 권력⁷⁾으로 교회 직무와 같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어지는 의무 및 권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의 신분에 따르는 의무와 권리를 직무 규정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한 성직자가 자신의 신분(자연인 혹은 성직자 신분) 때문에 가지는 의무와 권리가 있지만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 인사 발령이 나면 본당 사목구 주임의 교회 직무에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즉, 직무 규정으로서 권리와 의무). 평신도(자연인 혹은 평신도 신분)는 교구 재정 그리고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직무 규정으로서 권리와 의무). 봉헌 생활회의 회원(자연인 혹은 봉헌 생활회원의 신분)은 수도회의 총장 임무를 받을 수 있다(직무 규정으로서 권리와 의무).⁸⁾

1.1. 평신도 신분

1.1.1. 교회법 제207조 제1항에서 평신도

교회법 제207조 제1항은 규정한다. “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

Città del Vaticano, 2013, p.175”; 혼인한 사람들은 혼인과 가정을 통한 고유한 소명으로 하느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의무가 있다. 부부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할 암시적 위임이 있음을 말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부부의 교회 안에서 역할은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에 상응하는 삶의 새로운 신분에서 비롯된다: Cf. A. Gilbert, *The mission of the family in the church in the light of can.226 §1*, p.95.

6) 제145조 제1항 교회 직무는 영적 목적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하느님이나 교회의 법규에 따라 고정적으로 설정된 온갖 임무이다. 제2항 각 교회 직무의 고유한 의무와 권리는 그 직무가 설정되는 법 자체나 또는 이를 설정하고 수여하는 관할권자의 교령으로 규정된다.

7) 제131조 제1항 정규 통치권은 법 자체로 어떤 직무에 결부된 것이다. 위임된 통치권은 직무에 상관없이 사람에게 수여된 것이다.

8) P. Valdrini, *Comunità, persone, governo: Lezioni sui libri I e II del CIC 1983*, pp.175~176; D. Composta, *La Chiesa visibile. La realtà teologica del diritto ecclesiale*, Città del Vaticano, 2010, p.203.

에서 성직자라고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은 평신도라고 부른다.” 제1항은 평신도가 성품을 받지 않은 신자이므로 두 가지 기본 측면이 강조된다. 첫 번째, 평신도는 신자이다. 두 번째, 평신도는 성직자가 아니다.⁹⁾

(가) 평신도는 신자이다

세례성사를 받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평신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며 하느님 자녀들의 존엄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모든 평신도는 거룩함에 불리어지고 교회의 사명에 책임이 있는 그래서 사도직 수행의 권리가 있기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어 첫 자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불리어 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평신도로서 신자들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질 자격이 있다(교회법 제224~231조).¹⁰⁾

(나) 평신도는 성직자가 아니다

평신도가 성직자로 되는 것은 개인적인 공로가 아니라, 성소와 성품성사를 받는 것에 달려 있다. 이 성사에 의해 성직자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다양한 본질적 방법으로 참여하게 된다. 성품을 받은 신자는 성직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성체)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다. 그리고 보편 사제직을 받은 신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보편적으로 참여하는 신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그리고 보편 사제직만이 아닌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이에게 반드시 유

9) 1983년 법전에서는 평신도의 특별한 정의는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이등분 그리고 삼등분되어 나타나는 평신도의 두 개념을 탐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이등분과 관련된 분류는 성품성사(성직자 혹은 평신도)에 반영된 관점이 연관된다. 반면 삼등분은 신자들의 카리스마(은사)적 관점에서 규정되고 카리스마(은사)에서 유래되는 삶의 다른 방식들이다. 삼등분과 관련하여 신자들은 교구 사제들, 봉헌 생활회 회원들 그리고 평신도들로 구분된다; L. Navarro, *Persone e soggetti nel diritto della Chiesa: Temi di diritto della persona*, Roma, 2008, p.104.

10) *Ibid.*, p.105.

보된 역할들도 있다.¹¹⁾ 그래서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차이는 본질적인 부분이지 계급의 차이는 아니다.

1.2. 성직자 신분

“그리스도교 신자들 가운데 거룩한 직무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은 세례로 받은 신앙의 선물을 은총의 중재자요 하느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자이며(교회법 제207조 제1항; 제1008조), 하느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목자의 임무로 생활한다.”¹²⁾ 현재 성직자 신분의 개념은 3단계(주교, 사제, 부제) 중 부제품과 그 이후의 서품을 받은 신자들을 지칭한다. 그래서 성직자는 서품 받은 신자이다(교회법 제207조 제1항). 이 성품성사는 오직 교회법에 따라 상응하는 나이가 되고, 양성을 받은 남성의 신자에게만 수여된다.¹³⁾

2. 성품성사의 요건들

교회 안에서 성직자 신분을 얻기 위해선 성품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말씀하신다. “다음은 성품성사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사제는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연결되어 그로부터 시작하고 그의 눈으로 행동하며 우리의 목자가

11) *Ibid.*, pp.105~106.

12) G. Ghirlanda, “*CHIERICO(Clericus)*”, in C. C.Salvador, V. D. Paolis, G. Ghirlanda(curr.),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 1993, pp.152~153; 카를로스 C. 살바도르, 벨라시오 데 파올리스, 지안프랑코 길란다 외, 『교회법률 용어사전』, 한동일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7, 575쪽.

13) 오직 남성들에게만 성품성사를 수여하는 점과 관련하여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반복되어 확인된 사제적 직무에 여성의 제의를 기억하게 하는 교서가 결정적으로 진술한다. 참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 서품에 관하여」, 1994.5.22., 4항, in *AAS* 86(1994), 545~548. 참고: 교황청 신앙교리성, *Circa Quaestionem Admissionis Mulierum ad Sacerdotium Ministeriale*, 1976.10.15., in *AAS* 69(1977), 98~116[in *EV* 5(1979), 1393~1423]. 교황청 신앙교리성, *Responsum ad dubium Utrum doctrina circa doctrinam in Epist. ap. “Ordinatio sacerdotalis” traditam*, 1995.10.28., in *AAS* 87(1995), 1114[in *EV* 14(1997), 1959~1965]. Cf. L. Navarro, *Personae e soggetti nel diritto della Chiesa: Temi di diritto della persona*, p.65, n.b.7.

되길 원하시는 사람이며 하느님 안에서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직무를 그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행한다.”¹⁴⁾

즉, 성품성사를 받음으로서 축성된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특별한 구성이 생성되며, 새로운 축성은 세례성사에 더해져,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나타내는 서품 받은 이의 영혼에 존재론적인 변화가 진행된다. 성직자의 경우, 그리스도와 특별한 구성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확장하고 건설하도록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봉사자가 된다(교회법 제1009조 제3항 참고).¹⁵⁾ 교회를 건설하는 성직자는 주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넘치는 인정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리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처럼 훈계하여야 한다. 사도의 말씀에 따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며 끝까지 참고 가르쳐야 한다”(2티모 4,2 참조).¹⁶⁾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임무를 자기에게 맡겨진 권위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품성사는 현 교회법전에 유효함과 합법함을 위한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2.1. 유효성을 위한 요건들¹⁷⁾

2.1.1. 오직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거룩한 서품은 세례 받은 남자에게만 유보된다(Sacram or dinationem valide recipit sous vir baptizatus: 교회법 제1024조).” 남자(vir)의 고유하고

14) Benedetto xvi, *Pensieri sul Sacerdozio*, p.21.

15)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2, 6, 12항.

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6항: L. Navarro, *Personne e soggetti nel diritto della Chiesa: Temi di diritto della persona*, pp.65~66.

17) Cf. G. Incitti,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formazione all'esercizio*, Roma, 2013, pp.157~163; J. Ostrowski, *La perdita dello stato clericale con particolare riferimento alla dimissione penale nel vigente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1997, pp.17~19.

즉각적인 의미는 여성, 여자(mulier, femina)에 반대되는 의미가 주어지고 생물학적 성에 관련하여 명백한 남성의 상태(조건)를 나타낸다.¹⁸⁾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남성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다.¹⁹⁾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 서품에 관하여」라는 교황 교서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1995년 10월 28일 신앙교리성이 공개적으로 답²⁰⁾을 하였다.

(1) 교회의 사명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평등함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2) 사제 직무의 본성은 봉사이므로 개인적인 주장에 도구나 권리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3) 사도들의 선택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취하신 실천은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으로 확인된다.

(4) 교회의 전통이다.

(5) 교회는 사회로부터 고유한 구조적 모델을 본 따지 않고, 예수님께 계시된 하느님 말씀에 대한 최고의 신실함을 전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²¹⁾

18) G. Incitti,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formazione all'esercizio*, p.157.

19) 참고: 성 바오로 6세, 회칙 「사제 독신 생활」(*Sacerdotalis caelibatus*), 1967.6.24., in *AAS* 59(1967), 257~299; 교황청 신앙교리성, 선언 「여성 교역 사제직 불허」(*Inter insigniores*), 1976.10.15., in *AAS* 69(1977), 98~116;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여성의 존엄」(*Mulieris dignitatem*), 1988.8.15., 26항, in *AAS* 80(1988), 1715~1716; 성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12.30., 49~52항, in *AAS* 81(1989), 486~498;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 서품」(*Ordinatio sacerdotalis*), 1994.5.22., in *AAS* 86(1994), 545~548; [A. Migliavacca, *L'ORDINE*, in *Quaderni di Apollinaris* 10(2004), 165, n.b.40].

20) 교황청 신앙교리성, *Responsum ad dubium Utrum doctrina circa doctrinam in Epist. ap. "Ordinatio sacerdotalis" traditam*, 1995.10.28., in *AAS* 87(1995), 1114; *Notitiae* 31(1995), 610s; *L'Osservatore Romano*, 1995.11.19., 2; in *EV* 14, 1958~1965.

21) Cf. A. Migliavacca, *L'ORDINE*, pp.165~166.

게다가 규정은 오직 남성에게 사제직이 유보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교회법적 질서 안에서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음을 반복한다.²²⁾

2.1.2. 누구든지 서품을 받기 위하여는 합당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

교회법 제1026조에서 고려된 서품을 받기 위한 합당한 자유의 요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²³⁾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불법적으로 강제되는 모든 억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교회법 제219조 참고).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강압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행사되며, 하느님의 뜻이나 순종의 고결함을 위한 변명 혹은 선을 목표로 함을 구실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²⁴⁾

자유를 침해하는 강압의 방법 중 육체적, 심리적 폭력(중대한 공포)이 두 가지 큰 가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육체적 폭력은 교회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 서품이 된다. 구체화(객관화)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지만, 피해 당사자가 절대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위협에 있고 모든 능력 혹은 지적 능력 그리고 자유 의지가 완전히 흐려지는 중대한 경우에 영향을 끼친다.²⁵⁾

심리적 폭력은 그 자체로 서품 무효로 예상되지 않는다. 교회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심한 공포나 범의 때문

22) 교황청 신앙교리성, 일반 교령 「여성 서품을 시도하는 범죄」(*Delicto attentatae sacrae ordinationis mulieris*), 2007.12.19., in *AAS* 100(2008), 403; in *EV* 24(2007), 1250~1251.

23) ‘긍정적인 의미로 “강압”이라는 단어는 후보자가 신학교에 들어오거나 혹은 남아 있거나 혹은 자신의 의지에 맞서 서품을 받도록 유도하는 최종적인 행동 혹은 어떠한 효과(활동)를 의미한다. 반면 부정적인 의미로 “강압”은 후보자가 전적으로 서품을 받는 것에서부터 혹은 양성 과정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독단적으로 (임의로) 벗어나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A. D’Auria, *Libertà del fedele scelta della vocazione. La tutela giuridica del can.219 C.I.C.*, Città del Vaticano, 2012, p.101.

24) G. Ghirlanda, *L’ordinesacro*, in Longhitano A., Montan A., Manzanares J., De Paolis V., Ghirlanda G.(curr.), *I SACRAMENTI DELLA CHIESA*, Bologna, 1989, p.280(G. Incitti,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formazione all’esercizio*, p.162).

25) A. D’Auria, *Libertà del fedele scelta della vocazione. La tutela giuridica del can.219 C.I.C.*, p.105.

에 행한 행위는 유효하다. 심한 공포는 모방 혹은 거짓된 서품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당사자의 필요한 의지가 없으면 그 서품은 무효이다. 서품 지원자의 자유만 감소시키는 다른 요소들은 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지만, 면제의 요구를 위한 유효한 요소로 주장될 수 있다.²⁶⁾

2.2. 합법성을 위한 요건들

2.2.1. 합당한 자격

교회법 규정에서 세 번에 걸쳐(교회법 제1025조 제1항, 제1029조, 제1051조 제1호)²⁷⁾ 서품 후보자가 갖춰야하는 합당한 자격에 관한 주교의 판단으로 특별한 자질의 증명에 대해 논해야 함을 요구한다. 즉 서품 후보자는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요구되어지는 자격은 교회가 공적으로 거룩한 직무에 주요하고 필요한 요소로 인해 원하기에 오직 소속 주교의 선택에만 맡겨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주교는 자신의 행위 혹은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비전에 근거하여 서품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²⁸⁾

26) *Ibid.*, p.105.

27) 제1025조 제1항 사제품이나 부제품을 적법하게 수여하기 위하여는, 후보자가 법규범에 따른 증명기를 거친 후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이 있고 아무런 무자격과 장애도 없으며, 또 제1033~1039조의 규범에 따른 전제 요건들을 채워야 할 뿐 아니라 제1050조에 언급된 서류들이 구비되고 제1051조에 언급된 정밀 조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1029조 모든 것을 심사숙고한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은 현명한 판단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지향이 올바르며 합당한 지식을 갖추고 평판이 좋으며 품행이 바르고 덕행이 있으며 또한 받을 성품에 합당한 신체적 및 심리적 기타 자격들을 구비하고 있는 자들만이 성품에 승격되도록 해야 한다.

제1051조 서품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에 관한 정밀 조사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1. 품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즉 후보자의 올바른 학식과 순수한 신심과 좋은 품행 및 교역 직무 수행을 위한 적성에 관한 신학교나 양성소의 장의 증명서와 아울러 서품 후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에 관하여 정식으로 조사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28) G. Incitti,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2.2.2. 온전한 신앙

서품 후보자의 온전한 신앙은 일상적이며 질서정연함으로부터 강조되고 지적인 양성을 특징짓는 성실하고 오랜 노력은 성숙하고 기쁘고 확신하는 신앙으로 성직자 양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품 받는 이들은 오늘날 신자들을 동반자로 만들 수 있으며, 성직자 안에 머무는 구원과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을 일으키고 마음속에서부터 희망의 목적을 야기시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성직자들은 온전한 신앙으로 오늘날의 역사적 과도기에 존재하는 모순들에서 드러나는 두려움 없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아름다움, 신앙의 해방력을 재발견하기 위한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다원적이고 다민족적이며 다종교적인 사회에서 직면하고 대화할 준비를 할 것이다. 온전한 신앙으로 최상의 진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²⁹⁾

2.2.3. 올바른 지향

신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조건처럼 양성 과정의 시작에서 요구되어지는 올바른 지향과 서품 승인을 위한 자질로서 요구되는 올바른 지향은 후보자가 신학교 양성 과정 동안 보여줘야 하는 특별한 성격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교육 환경에 의해 서품 동기에 영향을 받는 신학생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대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헌신하며, 젊은이들이 복음과 관심있는 유형 이외에 관련 없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음을 드러내야 한다.³⁰⁾

formazione all'esercizio, p.164.

29) 이탈리아 주교회의, *La formazione dei presbiteri nella Chiesa italiana*, in *Notiziario de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10(15 novembre 2006), n.95.

30) G. Incitti,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formazione all'esercizio*, p.165.

2.2.4. 합당한 지식

서품 후보자들의 지적 양성은 사제직 그 자체의 본질 안에서 그 특별한 정당화를 발견하고 “새 복음화”의 도전에 직면하여 현재의 시급성을 드러내게 한다. 이 서품 후보자들을 위해 성직자들은 교육과 사목 활동 안에서 지적 양성의 가치 성장을 부지런히 돌보아야 한다.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더욱더 깊이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종교적 무관심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실에 도달하는 이성의 실제 능력에 관한 광범위한 불신과 과학적 및 기술적 발견에 의해 야기된 미발표된 문제와 의문으로 심각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은 사제들에게 변화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인간의 합법적인 요구에 맞서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뛰어난 수준의 지적 양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게다가 인간 사회만이 아닌 교회 공동체 자체에서 매우 강조되는 다원주의의 현상은 비판적 식별을 위한 특별함이 요구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지적 양성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³¹⁾

2.2.5. 좋은 평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직자는 관계적 차원이 중요한 직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 사목자의 신뢰성과 효과를 위한 출발 조건으로서 좋은 평판이 요구됨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약 적절히 배치된 양성 기간 동안 형제들과 함께 교육의 형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³²⁾

31) 성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3.25., in *AAS* 84(1992), 51항, 748-750.

32) Cf. G. Incitti,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formazione all'esercizio*, p.166.

2.2.6.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

서품 후보자는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건강에 대한 평가가 법적 문서의 고유한 영역이 되므로 이에 전문가의 참가는 이 영역 안에서는 도움이지만, 성품성사와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의 적합성의 최종적 판단은 전적으로 교회의 권한이 있는 자의 권위이다. 교구 직권자는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한”(교회법 제1051조 제1호) 후 전문가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³³⁾

(가) 신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에 관한 기준들은 자연스럽게 의료 과학의 발전에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다. 한 때 신학교에서 배제된 질병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애분야에서는 매우 명백한 장애만이 간주되었다. 오늘날은 후보자의 입학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들도 오늘날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 과학의 진보 덕택으로 따라오는 치료법은 빈혈, 당뇨병, 투석 및 이식환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삶의 법률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곳에서 유효한 규칙을 세우기가 어렵다면, 모든 경우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질병의 출현은 판단의 섬세한 점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은 이미 진단된 후천성면역결핍증(HIV)과 자가 면역 질환은 금기이다. 비록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다발성 경화증, 근이영양증,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회복된 사람들조차도 특히 신경학적 수준에서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테스트를 받아야하므로 특히 넓은 범위의 약물 중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심각한 식이 장애(거식증, 폭식증) 및 우울증은 사람의 심리적 차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증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³⁴⁾ 자가면역 질환(글루텐 반응)과 알코올 중독의 경

33) *Ibid.*, p.166.

34) Cf. R. Briolotti, *Handicap e vocazione: Gli anni dopo il Concilio Vaticano II*, in *vita*

우 다음의 신앙교리성의 답서에서 다뤄졌다. “사제의 생활에서 성찬례 거행의 중심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고 글루텐이나 에탄올 알코올을 섭취할 수 없는 성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입학을 허락하기 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³⁵⁾

(나) 심리적 건강

교회법 규정에는 서품 후보자의 심리적 건강의 상태 확인에 있어 명시적이며, 다른 특성에 비해 강화된 방식으로 요구된다. “어떤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으로 고생하는 자로서, 전문가에게 자문한 후 교역을 올바로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이다”(교회법 제1041조 제1호).³⁶⁾ 다만, 양성에서 심리학자의 올바른 기여와 연관된 복잡한 문제는 아직 신학교의 실무에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신중한 고려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³⁷⁾

consacrata 42(2006), 377~392.

35) 교황청 신앙교리성, 「영성체 형태에 관한 규범」(*Lettera circolare ai presidenti delle conferenze Episcopali circa l'uso del pane con pocaquantità di glutine e del mosto come materia eucaristica*), 2003.7.24; Cf. E. Frank, *I Sacramenti dell'Iniziazione, della Penitenza e dell'Unzione degli infermi. Commento ai Canon, pp.834-1007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ittà del Vaticano, 2012, pp.120~124.

36)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신학생 선발과 양성에서 심리학 활용 지침」(*Orientamenti per l'utilizzo delle competenze psicologiche nell'ammissione e nella formazione dei candidati al sacerdozio*), 2항, 2008.6.29.; in *EV* 25(2011), 710~713.

37)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신학생 선발과 양성에서 심리학 활용 지침」(*Orientamenti per l'utilizzo delle competenze psicologiche nell'ammissione e nella formazione dei candidati al sacerdozio*), n.6, 2008.6.29.; in *EV* 25(2011), 716~717; A. Manenti, “Forme di collaborazione dei responsabili della formazione con gli esperti nelle scienze psicologiche”, in *SEMINARIUM* 49(2009), 358; G. Ghirlanda, “Utilizzo delle competenze psicologiche nell'ammissione e nella formazione dei candidati al sacerdozio”, in *Periodica* 98(2009), 598; G. Brugnotto, “«Una profonda sinergia». Responsabilità e compiti nella comunità ecclesiale del seminario maggiore”, in *Quaderni di diritto ecclesiale* 21(2008), 393; G. Incitti,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formazione all'esercizio*, pp.168~169.

2.2.7. 교회 직무에 유용함

1917년 법전 제969조³⁸⁾와 비교하여 현 교회법 규정은 거룩한 직무의 공적인 성격이 다시 한번 강화되었다. 따라서 오직 소속 주교의 판단으로 교구에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후보자에 게만 서품이 금지되었다(교회법 제1030조). 그러나 이미 교회법 개정 위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2항과 입적의 새로운 차원에서 전체 교회 안에서 직무의 유용성을 이유로 규정을 공식화함을 고려하였고,³⁹⁾ 교회법 제1025조 제2항에 다다랐다.

“합법적 장상의 판단으로 수품 후보자가 교회의 직무에 유효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소속 주교에 의한 후보자의 서품 허가는 개별 교회에만 초점이 맞춰진 제한된 가치로 소진되게 할 수 없다. 소명은 개별 교회적인 맥락에서 태어났지만, 보편 교회 차원에서도 열려 있음이 드러나야 한다. 게다가, 교회법 규정은 성직자들의 보편적인 차원으로 육성(교회법 제257조)과 직무 수행을 위해 다른 곳에 이주할 허가를 성직자에서 수여해야 하는 규정(교회법 제271조)을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드러낸다.

38) Can.969 §1. Nemo ex saecularibus ordinetur, qui iudicio proprii Episcopi non sit necessarius vel utilis ecclesiis dioecesis.

§2. Non prohibetur tamen Episcopus proprium promovere subditum, qui in futurum, praevia legitima excardinatione et incardinatione, servitio alius dioecesis destinetur.

① 소속 주교가 교구의 필요 혹은 유익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사제로 서품되어서는 안 된다.

② 주교가 장래 자신의 종속자에 대하여 합법적 제적 및 입적을 행하고서 타 교구의 직무에 지명되는 경우 당사자를 서품시키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9) Cf. Ex actis pontificiae commissionis codici iuris canonici recognoscendo, *coetus studiorum «De Sacramentis»*(Sessio II), in *COMMUNICATIONES* 30(1998), 94-96.

2.2.8. 요구되는 나이⁴⁰⁾

교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교회법 제1031조).

가) 사제품을 받기 위해선 25세를 채워야 한다.

나) 사제품에 예정된 자들은 23세를 채운 후에만 부제품에 허가되어야 한다.

특별히 후보자가 서품에 합법적으로 허가되기 위한 연령의 요구로부터 1년 이상의 관면은 사도좌에 유보된다(교회법 제1031조 제4항). 이 점에 권한을 지니고 공표한⁴¹⁾ 경신성사성은⁴²⁾ 이 관면은 본질적으로 예외적인 성격이며 그리고 6개월을 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대해서만 “주교의 양심”에 따른 계약상의 형식으로 허가된다.⁴³⁾ 게다가 교회법은 부제품과 사제품 사이에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지켜져야 한다고 규정한다(교회법 제1031조 제1항).

2.2.9. 견진성사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개정되어 다시 올려진 규정(Sess. XXIII, 1563.7.15.)에서는 삭발례를 받기 위한 요건들이 언급되어 있다. “제4조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자들과 신앙의 기본 진리들을 배우지 않은 자들, 읽고 쓰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하느님께 신실한 봉사를 바치려 하기보다는 사기를 통해 세속의 법정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의심이 드는 자들은 삭발례를 받을 수 없다.”⁴⁴⁾

40) Cf. G. Incitti,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formazione all'esercizio*, p.170.

41) 참조: 교황청 경신성사성, *Notificazione sulla dispensa dal difetto di età per i candidati all'ordine sacro*, in *Notitiae* 33(1997), 281~283.

42)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착한 목자」(*Constitutio apostolica Pastor Bonus*), 1988. 6.28., 62항, in *AAS* 80(1988), 876.

43) Cf. A. D'Auria, “L'età canonica per il presbiterato e il diaconato e la dispensa fino al 18 mesi”, in *Ius Missionale* 3(2009), 13~26.

교회법 개정 위원회는 공의회 의 규정을 참고하여 견진성사를 권장할 만한 이유로 현 교회법전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교회법 제 1033조에는 오직 서품의 합법을 위해 견진성사의 서품 이전 수여가 늘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2.2.10. 양성과정

(가) 신학교에서 양성

교회법 제232조 “교회에는 거룩한 교역에 위임되는 이들을 육성할 고유하고 독점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는 소신학교와 대신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성소 배양을 위하여 인문 및 과학 교육과 함께 특별 종교 교육을 전수하도록 마련된 소신학교들 또는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보존되고 조장되어야 한다. 더구나 교구장 주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곳에서는 소신학교나 이와 유사한 학원의 설립을 도모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34조 제1항). 다만, 소신학교가 아닌 자신의 고장에서 상급 학업을 이수하기 위하여 준비할 경우 인문 및 과학 교육을 마쳐야 하고, 사정에 따라 달리 하여야 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교회법 제234조 제2항 참조). 즉, 반드시 소신학교가 필수적이라 할 수 없다. 반면, 대신학교는 필수적이다. 대신학교들은 미래의 성직자들이 개별 교회와 사목활동을 하기 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구에 신학교가 존재하면 신자들의 공동체에 직접적인 책임감을 지니는 소명이 생기는 것을 교회법이 선호하기 때문에 모든 교구에 일반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 계획에 대해서 교회법의 규정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으로부터 형성된 질문들이 적용한다. 교회는 “변천하는 시대 상황, 다양한 백성들과 지역들에

44) *Canones et decreta concilii tridentini*, Neapoli, 1859, p.181[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 - pastorale* 2(2011), 241]; 주세페 알베리고 외,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 트렌토 공의회,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가톨릭출판사, 2006, 746쪽.

부합하는 새로운 법규들을 도입”하기 위한 “수세기 동안의 경험”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 선포하신다. “신학교를 하나의 장소로서 또한 삶의 어떤 기간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학교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전진하는 교육 공동체이다. 다시 말해서 신학교는 주님께서 열두 사도들에게 특별히 시키셨던 양성의 경험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사도들처럼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교가 설립한 공동체이다.”⁴⁵⁾

(나) 권위자에 의하여 먼저 선발 예식으로

후보자들 명단에 등록되어야함

교회법 제1034조 제1항은 “부제품이나 사제품의 지원자는 먼저 자기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청원서를 교회법 제1016조와 제1019조에 언급된 권위자가 서면으로 수락한 후 이 권위자에 의하여 먼저 선발 전례 예식으로 후보자들 명단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한 서품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즉각 입법화된 규정은 두 가지 점에서 구분된다.⁴⁶⁾ 후보자들의 명단에 등록과 선발 전례 예식이다. 등록의 법적 관련성은 권위자의 서면으로 동등하게 승인이 일치하게 요구되는 서면 신청서의 형식에서 즉시 나타난다. 교회의 선택 행위이기 때문에 서면의 법적 관련성은 당사자의 개인적 행위(자기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선언서)임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권위자의 수락에 의한 관련성에서 나타난다.⁴⁷⁾ 오늘날, 이 과정은 중요한 순간이고 후보자, 교회 공동체 그

45) 참조: 성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 1992.3.25., in *AAS* 84(1992), 60항, 762~764; *Congregatio pro Institutione Catholica*,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15 gennaio 1970, in *AAS* 62(1970), 321~384;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은 각 주 교회의로부터 합리화를 위한 기초가 되는 기본 규범을 발표하였다: Cf. P. Valdrini, *Comunità, persone, governo: Lezioni sui libri I e II del CIC* 1983, p.201.

46) 참조: 성 바오로 6세, 자의교서 「거룩한 부제품에 관한 일부 규범」(*Litterae Apostolicae Datae Ad Pascendum*), 1972.8.15., in *AAS* 64(1972), 538~539.

47) «necnon competentis Superioris ecclesiastici acceptio scriptio data, vi cuius Ecclesiae electio efficitur»: “교회의 선택에 의해 행해짐에 따라 교회의 권한 있는 장상의 서명으로 승인된 것은 물론이고”; 참고: 성 바오로 6세, 자의교서 「거룩한 부제품에 관한 일

리고 소속 주교를 위해 더 큰 결과로 취급된다.⁴⁸⁾ 이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신학교의 양성 과정에 따른 양성 프로그램과 과정을 검토하게 한다. 더불어 후보자들이 등록한 후 후보자가 부제품 직전에 있는 개인적인 입장에 합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상황은 독서직과 시종직의 수여 및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⁴⁹⁾

(다) 부제품과 사제품 전 사목 활동

교회법 제1032조는 부제품에 승격된 이들로서 사제품 후보자들을 위한 제2항을 규정한다. 부제품을 받은 이는 “사제품에 승격되기 전에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이 정한 적당한 기간 동안 부제품을 행하면서 사목에 참여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032조 제2항).⁵⁰⁾

2.2.11. 선언서

자유와 자발성은 서품을 받는 이들에게 본질적인 요구 사항이며 이런 관점에서 서품 후보자는 서품 허가를 승인 받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언하여 청원해야 함이 요구된다. 교회법 제1036조는 청원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으며 자신의 손으로 작성하고 최대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정신을 규정으로 드러낸다.⁵¹⁾

“제1036조 후보자가 부제품이나 사제품에 승격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자진하여 자유로이 성품을 받을 것이며 교회의 교역(직무)에 종신토록 헌신하겠다는 증명한 선언서를 자기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성품을 받을 허가도 청원하여야 한다.”

부 규범」(*Litterae Apostolicae Datae Ad Pascendum*), 1972.8.15., in *AAS* 64(1972), 538.

48) 신학교 입학 자격 평가에 관한 조항은 후보자들 중 등록 자격 평가처럼 훨씬 더 적절하게 여기에 계획될 수 있다; G. Incitti,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formazione all'esercizio*, p.172, n.b.61.

49) Cf. G. Incitti,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formazione all'esercizio*, pp.173~174.

50) Cf. *Idid.*, p.174.

51) Cf. *Idid.*, p.174.

2.2.12. 공적으로 독신 생활의 의무를 수락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 「하느님 백성의 사목」(*Ad Pascendum*)⁵²⁾에는 부제품에 수반되는 예식으로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거룩한 독신 생활을 받아들이는 공적 서약’을 언급한다. 만약 후보자가 독신의 의무를 수락하는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부제품은 이어지지 않고 독신의 의무도 계약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성직자의 독신 의무는 부제품 중 후보자가 공적인 수락을 했다고 해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성직자의 독신 의무는 후보자가 예식 안에서 공적인 수락의 행위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교로부터 부제품의 승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⁵³⁾ 부제품에 승낙되지 않은 후보자에게 독신의 의무를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수락하는 예식 자체가 거행될 수 없다(교회법 제1037조 참고).

2.2.13. 영성 수련

영성 수련의 중요성은 교회 전통과 영성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 교회법 규정은 소속 주교에게 영성 수련과 관련하여 특정한 규제로 위임되어 있어, 주교는 후보자들이 이러한 영성 수련을 올바르게 마쳤다는 것을 확인하는 점에 책임이 있다(교회법 제1039조 참고). 다만 이 의무는 교회법 제1025조 제1항에서 언급하듯이 교회법 제1050조와 제1052조 ‘서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와 정밀 조사’ 판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⁴⁾

52) 성 바오로 6세, 자의교서 「거룩한 부제품에 관한 일부 규범」(*Litterae Apostolicae Datae Ad Pascendum*), 1972.8.15., in *AAS* 64(1972), 538-539.

53) Cf. G. Incitti,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formazione all'esercizio*, p.174.

54) Cf. *Ibid.*, pp.175-176.

2.2.14. 요청되는 문서들⁵⁵⁾

교회법 제1052조는 서품 수여자인 소속 주교의 책임을 언급하며 요청된 문서가 수집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요청된 문서는 아래 교회법 제1050조로 규정된다.

제1050조 누구든지 성품에 승격될 수 있기 위하여는 다음의 문서들이 요구된다.

1. 제1032조⁵⁶⁾의 규범에 따른 학업을 올바로 수료한 증명서.
2. 사제품 후보자에 대하여는 부제품을 받은 증명서.
3. 부제품 승격 후보자에 대하여는 세례와 견진을 받은 증명서, 또 제1035조⁵⁷⁾에 언급된 교역직을 받은 증명서, 또한 제1036조⁵⁸⁾에 언급된 선언을 한 증명서.

위의 요청된 문서 이 외에 또 법규범에 따라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적격성이 긍정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소속 주교는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주교가 타인의 소속자의 서품식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문서들이 구비되었다는 것과 법규범에 따라 정밀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것과 후보자의 적격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수품 허가서가 표시하면 충분하다. 만일 서품 후보자가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이면 그가 그 회나 단에 확정적으로 입회되

55) Cf. G. Incitti, *op.cit.*, p.176.

56) 제1032조 제1항 사제품의 지원자들은 철학과 신학 수업 과정의 제5학년을 수료한 후에만 부제품에 승격될 수 있다.

제2항 수업 과정을 수료한 후 부제는 사제품에 승격되기 전에 주교나 관할 상급장상이 정한 적당한 기간 동안 부제품을 집행하면서 사목에 참여하여야 한다.

57) 제1035조 제1항 종신 또는 과도한 부제품에 승격되려는 자는 그 전에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을 받고 적당한 기간 동안 실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시종직과 부제품의 수여 사이에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58) 제1036조 후보자가 부제품이나 탁덕품에 승격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자진하여 자유로이 성품을 받을 것이며 교회의 교역(직무)에 종신토록 헌신하겠다는 증명한 선언서를 자기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성품을 받을 허가도 청원하여야 한다.

었다는 것과 수품 허가서를 준 장상의 소속자라는 것도 수품 허가서가 증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교가 어떤 확실한 이유로 후보자가 성품성사를 받기에 적격자인지 의문되면 그를 서품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교회법 제1052조 참조).

2.2.15. 정밀 조사

교회법 제1051조는 서품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에 관한 정밀 조사 때 지켜져야 할 요건들을 규정한다. 첫째, 후보자가 서품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즉 후보자의 올바른 학식과 순수한 신심과 좋은 품행 및 교역 직무 수행을 위한 적성에 관한 신학교나 양성소의 장의 증명서와 아울러 수품 후보자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 상태에 관하여 정식으로 조사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즉, 서품 허가서는 학장과 주교에게 특별한 책임이 포함된다. 학장은 요구되는 자질의 상태를 증명하고 주교는 성사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교회법 제1051조 제1항은 “품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즉 후보자의 올바른 학식과 순수한 신심과 좋은 품행 및 교역(ministero)직무 수행을 위한 적성에 관한 신학교나 양성소의 장의 증명서와 아울러 수품 후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에 관하여 정식으로 조사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규정은 주교의 결정에 야기하는 신학교 학장의 증명서를 공식화해 특별하게 강조한다. 사실, 교육 공동체의 책임자는 양성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⁵⁹⁾

둘째, 교구장 주교나 상급 장상은 정밀 조사가 올바로 되기 위하여 다른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다. 교회법 제1051조 제2호는 서품 후보자에 대한 조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교구장 주교나 상급 장상은 정밀 조사가 올바로 되기 위하여 때와 장소의 사정에 따라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수단들 예컨대 증명서들이나 공고 또는 다른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다.” 혼인 공시와 유사하게 조항

59) Cf. G. Incitti,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formazione all'esercizio*, pp.176-178.

의 마지막 부분은 후보자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두고 참석하였던 장소나 출신 성당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⁶⁰⁾

2.3. 서품식

2.3.1. 거행 장소와 시기

교회법 제1010~1011조는 서품식 거행 장소와 시기에 관련된 일반적인 유형을 제공한다. 시기와 관련하여 교회법 조항은 서품식은 주일 혹은 의무 축일에 거행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특별한 전례인 성삼일, 재의 수요일, 성주간 그리고 위령의 날(11/2)은 제외되어야 한다.⁶¹⁾ “그러나 사목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날 평일에도 거행될 수 있다”(교회법 제1010조). 주교좌 성당은 서품식을 위한 우선적인 장소이다. 그러나 사목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교구 사제들을 위해서는 주교좌 성당 혹은 후보자 출신 성당에서 예식이 거행될 수 있음이 허락된다.⁶²⁾ 교회법 제1011조 제2항에서 “서품식에는 최대한 많은 회중이 참석하도록 성직자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초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⁶³⁾

2.3.2. 서품 집전자

교회법 제1012조에서 “거룩한 서품식의 집전자는 축성된 주교”임을 명확히 규정한다.⁶⁴⁾ 교회법에서 규정된 ‘축성된 주교’는 비록 가

60) Cf. G. Incitti, *op.cit.*, pp.176~178.

61) Cf. G. M. COMPAGNONI, *ORDINAZIONE DEI PRESBITERI*, in L. F. CONTI(cur.), *PRAENOTANDA DEI LIBRI LITURGICI*, Milano, 2009, n.121, n.1101.

62) Cf. *Ibid.*, n.121, n.1101.

63) Cf. *Ibid.*, n.120, n.202, n.1101, n.1105(A. Migliavacca, *L'ORDINE*, p.158).

64) A. Migliavacca, *L'ORDINE*, p.159(트리엔트 공의회 제3차 회기의 교령 ‘성품성사’ 제7조에서 말한 것에 완전히 모순되지 않으면서(DS 1777 참조) 주교는 직무에 의해, 곧 교회 안에서 수행해야 하고 축성으로 받는 직무 자체에 의해 서품을 줄 특별한 권한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사제는 교회 관할권자의 특별 은전에 의해

톨릭교회와 충분한 친교에 있지 않거나 혹은 정직이나 파문되었더라도 서품단계의 세 가지 등급인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가톨릭 교회교리서, 제1536~1537항)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있다. 유효하게 수여한 서품이지만 주교로부터 불법으로 거행되었을 경우 중대한 교회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교회법 제1382~1384조). 성품성사의 합법성을 위해선 수품 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주교 그리고 자신의 소속 주교가 집전을 해야 하는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교회법 제1015~1023조).⁶⁵⁾

2.3.3. 수품 허가서

서품 집전자가 소속 주교가 아닐 경우에는 소속 주교로부터 서품 집전자는 권한을 받아야 함이 필요하다. 수품 허가서는 소속 주교가 자신에게 속한 후보자에게 다른 주교가 서품을 주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 있는 문서이다(교회법 제1018조). 수품 허가서는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서품을 받는 후보자의 정체성에 관한 식별의 결정(완성)이다. 이 수품 허가서는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증명서와 서류가 먼저 구비되지 아니하는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1020조). 그리고 “서품하는 주교는 합법적인 수품 허가서를 받고서 그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서품식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1022조). “수품 허가서는 사도좌와 친교를 가진 어느 주교에게든지 송부될 수 있다. 다만 수품 후보자가 속하는 예법과 다른 예법의 주교에게는 사도좌의 윤희 없이는 아니 된다”(교회법 제1021조). “수품 허가서는 수여자 본인이나 그의 후계자가 제한을 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수여된 수품 허가서는 수여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교회법 제1023조).⁶⁶⁾

서만 서품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다 - 카를로스 C. 살바도르, 벨라시오 데 파울리스, 지안프랑코 길란다 외, 『교회법을 용어사전』, 한동일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7, 609~610쪽 참고).

65) A. Migliavacca, *L'ORDINE*, pp.159~164.

66) 수품 허가서 작성을 다루는 것은 수품 유효성을 위한 것이 아닌 합법성을 위한

2.4. 성직자의 입적

2.4.1. 1983년 법전에서 입적

교회법 제265조는 “어느 성직자든지 어떤 개별 교회나 성직 자치단 또는 어떤 봉헌 생활회나 이 특별 권한을 가지는 단체에 입적하여야 하고 따라서 무소속 즉 떠돌이 성직자들은 결코 용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교회법 제1016조는 규정한다. “소속 주교는 재속 성직자로 입적되고자 하는 자들의 부제 서품에 관하여는 수품 후보자가 주소를 둔 교구 또는 그가 헌신하기로 정한 교구의 주교이고 재속 성직자들의 사제 서품에 관하여서는 수품 후보자가 부제품으로써 입적된 교구의 주교이다.” 한마디로, 성직자의 신분은 소속 주교로부터 서품을 받음으로써 후보자가 주소를 둔 교구에 입적을 통해 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성직자를 개별 교회 혹은 회에 연결하는 법적 본성의 유대는 83년 법전에서 입적의 능력을 지닌다. 입적으로 인해 개별 교회의 일원이 된 성직자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선포하셨듯이(「현대의 사제 양성」 31항) “개별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교적인 영성에 따라 살아가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성직자의 신분을 지닌 이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직자의 신분은 개별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 동시에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사실에서 그 신분은 목자로서의 자신의 사명과 영성 생활을 결정하는 데 근간이 되는 행동 기준과 판별 기준을 비롯하여 많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의 다른 형식과 은사들을 개별 교회의 일원으로 속하는데 활용해야 하며 그래서 주교와 사제가 함께 협력 관계를 이루게 된다.⁶⁷⁾ “사제가 주교와 마음을

요구이다. 수품 허가서 없이 행해진 서품식은 유효한 수여라 하더라도 교회법 제1383조에 의해 예견되고 규정되는 위법이 된다. 제138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015조의 규정을 거슬러 합법적 수품 허가서 없이 타인의 소속자를 서품한 주교는 1년간 성품을 수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렇게 서품을 받은 자는 그 사실 자체로 받은 성품이 정직된다.”: Cf. G. Incitti,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formazione all'esercizio*, pp.202~203.

다하여 자녀다운 협력 관계를 이루고, 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봉사하면서,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개별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굳건하게 건설하는데 —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 더욱 헌신할 수 있으려면, 사제 생활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영향을 주게 되는 다른 모든 은사들을 활용해야 한다”(「현대의 사제 양성」 31항). 모든 거룩한 성직자들이 입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입적은 부제품 이후에 완료된다(교회법 제265~ 266조). 그리고 입적은 공동체와 교계제도적 유대이다. 유대는 신앙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계제도의 일

67) 이런 의미에서 입적은 순전히 법적인 유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소명 측면에서 특별한 외양(특징)을 수여함을 야기하는 사목적, 영적 선택 그리고 일련의 입장(태도)에 포함된다. 오늘날 사제의 존재 이유는 주교와 협력이지만 또한 같은 사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항상 교구의 직무(봉사) 혹은 또 다른 교회의 상황 때 문임이 강조된다.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 안에 있는 제275조 제1항으로 성직자의 협동하는 성향을 법전에서 설명한다. 주교와의 관계는 모든 성직자가 서품식에서 약속하고 법적인 의무처럼 교회법이 구성하는 순종에 의해 유일하게 표시되지는 않는다. 어떤 이유로 교회법적 순종의 속성을 함께 말할 수 있기 위해서, 특히 자신의 직권자로부터 위임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맡겨진 임무를 수락하는 것과 관련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성직자들은 교황 및 각자의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제273조). “성직자들은 합법적 장어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소속 직권자로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락하고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제274조 제2항). 하느님 말씀에 봉사하며, 다른 거룩한 직무와 주교에게 협력하며 평신도들과 함께 조직하여 협력하는 활동들은 사제의 교회법적 입적으로부터 행동하는 사도적·영성적 측면을 지시하는 다른 이름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직자의 순명은 단순한 외적인 의존을 제외하고 교계적 친교라는 생각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더 좋으며, 성품성사 그 자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순종을 표현하기에 더 적합하다. 이 성사적 뿌리는 순종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성직자의 조건에 일반적인 의무와 관련이 없는 측면에서 성직자의 합당한 자유와 그 자체로 양립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Ex *actisconsilii, Elementi per configurare l'ambito di responsabilità canonica del Vescovo diocesano nei riguardi dei presbiteri incardinati nella propria diocesi e che esercitano nella medesima il loro ministero*, in *COMMUNICATIONES* 36(2004), 34-35]. 순종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까지 확실히 확장되며 주교와 개인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순종은 사제와 부제에게 속한 주교들의 사도적 사명에 참여함을 설명하고 사제의 경우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다: A. Viana, *l'incardinazione nelle circoscrizioni ecclesiastiche*, in L. Navarro(cur.), *L'ISTITUTO DELL'INCARDINAZIONE. NATURA E PROSPETTIVE*, Milano, 2006, pp.148-149.

원으로서 성립된다. 이 말은 성직자의 입적을 통해서 주교의 존엄성이 일반적으로 몇몇 사목의 통치 아래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주교의 본성으로서 최소한의 권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단, 입적은 안정적으로 갖춰진 유대이지만, 영속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봉사의 관계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엄격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교회나 개인 성직자의 공동의 선과 관련하여 사목적인 이유가 있다면 변화될 수 있다.⁶⁸⁾

III. 결 론

‘하느님의 제정으로 세례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에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교회법적 신분에 속하는 성직자들과 부른다’(교회법 제207조 제1항 참고). 신자가 이 신분을 받기 위해선 교회가 제시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충족된 요건은 최종적으로 소속 주교가 판단하게 된다(교회법 제1029조). 이번 연구에서는 서품 받는 이의 소속에 대한 범위를 교구로 제한하여 교회법전에서 규정하는 서품 전제 요건 즉, 성직자 신분을 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았다.

교회 안에서 성직자 신분을 받기 위해선 성품성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 교회법전에 유효함과 합법함을 위한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첫 번째로 유효성을 위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오직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교회법 제1024조). 2) 누구든지 서품을 받기 위하여는 합당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1026조).

두 번째로 합법성을 위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주교의 판단으로 후보자가 교회가 원하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이 증명

68) L. Navarro, *Personae e soggetti nel diritto della Chiesa: Temi di diritto della persona*, pp.69~70.

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025조 제1항). 2) 후보자가 최상의 진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과 신학교 양성 과정 중 증명되어야 하는 올바른 지향, 그리고 후보자가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지식이 필요하다(교회법 제1029조). 3)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후보자의 좋은 평판이 요구된다(교회법 제1029조). 4) 후보자는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한다(교회법 제1029조). 5) 주교의 판단으로 후보자가 교회 직무에 유효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025조 제2항). 6) 사제품을 받기 위해선 25세를 채워야 하며, 사제품에 예정된 자들은 23세를 채운 후에만 부제품에 허가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031조 제1항). 7) 견진성사의 서품이전 수여가 늘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교회법 제1033조). 8) 대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양성 받은 후 적당한 기간 동안 부제품과 사제품 전 사목에 참여한 후보자는 주교에 의하여 먼저 선발 예식의 후보자들 명단에 등록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032조 제2항). 9) 후보자는 서품 허가를 승인 받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언하여 청원해야 함이 요구된다(교회법 제1036조). 10) 부제품에 승낙된 후보자가 공적으로 독신 생활 의무를 수락해야 한다(교회법 제1037조). 11) 주교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와 방식으로 영성 수련을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039조). 12) 교회법 제1050조에 규정된 요청되는 문서들을 잘 준비한다(교회법 제1050조). 13) 후보자의 수품에 요구되는 자격에 관해 정식으로 조사 한 증명서가 필요하다(교회법 제1052조 제1항).

성직자 신분을 받는 공적인 예식인 서품식에 대해선 거행 시기와 장소, 집전자와 수품 허가서로 규정되어 있다. 1) 거행 시기는 주일 혹은 의무 축일에 거행되어야 하나 사목 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날 평일에도 거행될 수 있다(교회법 제1010조). 2) 장소는 우선적인 장소로 주교좌 성당이나 사목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교회법 제1011조 제1항). 3) 서품 집전자는 축성된 주교이다(교회법 제1012조). 4) 서품 집전자가 소속 주교가 아닐 경우에는 서품 집전자는 소속 주교로부터 수품 허가서를 받아야 함이 필요하다(교회법 제1017조).

후보자는 성직자 신분을 받기 위해 유효하고 합법적인 요건을 지닌 점이 주교에게 최종 판단되고, 이어서 서품식을 통해 소속 주교로부터 부제품을 받게 된다. 부제품 이후 후보자는 소속 교구에 입적이 승낙됨으로 인해 마침내 성직자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

성직자는 여러 요건이 충족된 후보자가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교회로부터 받게 되는 교회법적 신분이다. 교회로부터 받은 신분은 언제든지 교회로부터 제명당할 수도 있다. 성직자의 신분은 교회법적 절차로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교회법 제290조). 즉, 유효하게 받은 서품과 성직자의 신분은 구분되어야 한다. 유효하게 받은 서품으로 성직자의 신분을 받게 된 이들 중 교회법적 절차로 그 신분이 상실된다면 다시금 평신도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말해, 유효하게 서품 받았지만 성직자 신분으로부터 제명되어 성직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금지된 평신도가 되는 것이며, 더 이상 성직자라고 불릴 수 없다.

[참고 문헌]

1. 공의회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Decretum de Presbyterorum ministerio et vita: Presbyterorum Ordinis*), 1965.12.7., in *AAS* 58(1966), 991~1024.

2. 교황 문헌

성 바오로 6세, 회칙 「사제 독신 생활」(*Sacerdotalis caelibatus*), 1967.6.24., in *AAS* 59(1967), 257~299.

_____, 자의교서 「거룩한 부제품에 관한 일부 규범」(*Litterae Apostolicae Datae Ad Pascendum*), 1972.8.15., in *AAS* 64(1972), 534~540.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착한 목자」(*Constitutio apostolica Pastor Bonus*), 1988.6.28., in *AAS* 80(1988), 841~912.

_____, 교서 「여성의 존엄」(*Mulieris dignitatem*), 1988.8.15., in *AAS* 80(1988), 1653~1729.

_____,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12.30., in *AAS* 81(1989), 393~521.

_____,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3.25., in *AAS* 84(1992), 657~804.

_____, 교서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 서품에 관하여」, 1994.5.22., in *AAS* 86(1994), 545~548.

3. 교회 문헌

Concilium Tridentinum: 1545~1563, *Canones et decreta Concilii Tridentini Accedunt* [...] Declarationes ac resolutiones [...] et constitutiones pontificiae recentiores [...] Editio altera, Pelella, Naepoli, 1859.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15 gennaio 1970, in *AAS* 62(1970), 321~384.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신학생 선발과 양성에서 심리학 활용 지침」(*Orientamenti per l'utilizzo delle competenze psicologiche nell'ammissione e nella formazione*

- dei candidati al sacerdozio*), 2008.6.29.; in *EV* 25(2011), 710~713.
- 교황청 경신성사성, *Notificazione sulla dispensa dal difetto di età per i candidati all'ordine sacro*, 1997.7.24., in *Notitiae* 33(1997) 281~283.
- 교황청 신앙교리성, 선언 「여성 교역 사제직 불허」(*Inter insigniores*), 1976.10.15., in *AAS* 69(1977), 98~116.
- 교황청 신앙교리성, *Circa Quaestionem Admissionis Mulierum ad Sacerdotium Ministeriale*, 1976.10.15., in *AAS* 69(1977), 98~116.
- 교황청 신앙교리성, *Responsum ad dubium Utrum doctrina circa doctrinam in Epist. ap. "Ordinatio sacerdotalis" traditam*, 1995.10.28., in *AAS* 87(1995), 1114.
- 교황청 신앙교리성, 「영성체 형태에 관한 규범」(*Lettera circolare ai presidenti delle conferenze Episcopali circa l'uso del pane con pocaquantità di glutine e del mosto come materia eucaristica*), 2003.7.24.
- 교황청 신앙교리성, 일반 교령 「여성 서품을 시도하는 범죄」(*Delicto attentatae sacrae ordinationis mulieris*), 2007.12.19., in *AAS* 100(2008), 403.
- 교황청 신앙교리성,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Anglicanorum Coetibus*)의 보완 규범, 2009.11.4., in *AAS* 101(2009),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20091104_norme-anglicanorum-coetibus_it.html.
- 이탈리아 주교회의, *La formazione dei presbiteri nella Chiesa italiana*, in *Notiziario de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10(15 novembre 2006).

4. 사전

-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a cura di Salvador C. C., De Paolis V., Ghirlanda, G., Edizioni Paoline, Milano, 1993.
- 카를로스 C. 살바도르, 벨라시오 데 파올리스, 지안프랑코 길란다 외, 『교회법률 용어사전』, 한동일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7.

5. 주석서

- Chiappetta, L.,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 Pastorale*, vol. I-III, Edizione Dehoniane Bologna, 2011.

6. 단행본

- Benedetto xvi, *Pensieri sul Sacerdozio*, Libreria editrice vaticana, Città del Vaticano, 2009.
- Compagnoni, G. M., *I Praenotanda dei libri liturgici*, in Conti L. F.(cur.), *Àncora*, Milano, 2009.
- Composta, D., *La Chiesa visibile. La realtà teologica del diritto ecclesiale*, Libreria Editrice Vaticana, Città del Vaticano, 2010.
- D'Auria, A., *Libertà del fedele e scelta della vocazione. La tutela giuridica del can. 219 C.I.C.*, Urbaniana University Press, Città del Vaticano, 2012.
- Frank, E., *I Sacramenti dell'Iniziazione, della Penitenza e dell'Unzione degli infermi. Commento ai Canon 834-1007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na University Press, Città del Vaticano, 2012.
- Gilbert, A., *The mission of the family in the church in the light of can.226 §1*, Pontificia Universitas Urbaniana, Roma, 2002.
- Ghirlanda, G., *I sacramenti della Chiesa*, in Longhitano A., Montan A., Manzanares J., De Paolis V., Ghirlanda G.(curr.), Edizioni Dehoniane Bologna, 1989.
- Incitti, G., *Il sacramento dell'Ordine n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l ministero dalla formazione all'esercizio*, Urbaniana University Press, Roma, 2013.
- Navarro, L., *Persone e soggetti nel diritto della Chiesa: Temi di diritto della persona*, Subsidia Canonica, Roma, 2008.
- Ochoa, X., *index verborum ac locutionum Codicis Iuris Canonici*, Commentarium Pro Religiosis, Roma, 1983.
- Ostrowski, J., *La perdita dello stato clericale con particolare riferimento alla dimissione penale nel vigente codice di diritto canonico*, Pontificia Universitas Lateranensis, Roma, 1997.
- Valdrini, P., *Comunità, persone, governo: Lezioni sui libri I e II del CIC 1983*, Libreria Editrice della Pontificia Università Lateranense, Roma, 2013.
- Viana, A., *L'istituto dell'incardinazione: natura e prospettive*, in Navarro L.(cur.), Giuffrè, Milano, 2006.
- 주세페 알베리고 외,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 트렌토 공의회,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가톨릭출판사, 2006.

7. 정기간행물

- Briolotti, R., “Handicap e vocazione: Gli anni dopo il Concilio Vaticano II”, in *Vita Consacrata* 42(2006), Milano, 377~392.
- Brugnotto, G., “Una profonda sinergia. Responsabilità e compiti nella comunità ecclesiale del seminario maggiore”, in *Quaderni di diritto ecclesiale* 21(2008), Milano, 375~397.
- D’Auria, A., “L’età canonica per il presbiterato e il diaconato e la dispensa fino al 18 mesi”, in *Ius Missionale* 3(2009), Città del Vaticano, 13~26.
- Ex actis pontificiae commissionis codici iuris canonici recognoscendo, coetus studiorum «De Sacramentis»(Sessio II), in *COMMUNICATIONES* 30(1998), Roma, 92~130.
- Ex actis consilii, “Elementi per configurare l’ambito di responsabilità canonica del Vescovo diocesano nei riguardi dei presbiteri incardinati nella propria diocesi e che esercitano nella medesima il loro ministero”, in *COMMUNICATIONES*, 36(2004), Roma, 33~38.
- Ghirlanda, G., “utilizzo delle competenze psicologiche nell’ammissione e nella formazione dei candidati al sacerdozio”, in *Periodica* 98(2009), Roma, 581~618.
- Manenti, A., “Forme di collaborazione dei responsabili della formazione con gli esperti nelle scienze psicologiche”, in *SEMINARIUM* 49(2009), Città del Vaticano, 353~372.
- Migliavacca, A., “L’ORDINE”, in *Quaderni di Apollinaris* 10(2004), Roma, 146~186.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직자는 교회 안에서 세례 받은 신자가 성품성사로 받게 되는 신분이다(교회법 제207조 제1항 참조). 신자가 이 신분을 받기 위해선 교회가 제시하는 요건들이 있다. 그 요건이란 “현명한 판단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지향이 올바르며 합당한 지식을 갖추고 평판이 좋으며 품행이 바르고 덕행이 있으며 또한 받을 성품에 합당한 신체적 및 심리적 기타 자격들을 구비하고”(교회법 제1029조) 있는 것이다.

후보자는 성직자 신분을 받기 위해 유효하고 합법적인 요건을 지닌 점이 주교에게 최종 판단되고, 이어서 서품식을 통해 소속 주교로부터 부제품을 받게 된다. 부제품 이후 후보자는 소속 교구에 입적이 승낙됨으로 인해 마침내 성직자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받은 신분은 언제든지 교회로부터 제명당할 수도 있다. 성직자의 신분은 교회법적 절차로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교회법 제290조). 유효하게 받은 서품과 성직자의 신분은 구분되어야 한다. 유효하게 받은 서품으로 성직자의 신분을 받게 된 이들 중 교회법적 절차로 그 신분이 상실된다면 다시금 평신도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말해, 유효하게 서품 받았지만 성직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금지된 평신도가 되는 것이며, 더 이상 성직자라고 할 수 없다.

▶ 주제어: 신분, 성직자, 성품성사의 요건들, 유효성, 합법성.